

대출 상품설명서(권유용)

| | | |
|------|----|-----|
| 본인확인 | 담당 | 책임자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라 은행 이용자에게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출 권유 및 상담시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로 교부됩니다.

1.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동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예시

- CD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91일물)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금융채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증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 COFX연동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기 COFX 금리 또는 잔액기준 COF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매 6/12개월마다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 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에는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수수료 등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의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하여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기준 -기업여신

| 부동산/동산 담보 대출 | | 신용/기타 담보 대출 | |
|--------------|------|-------------|------|
| 고정금리 | 1.4% | 고정금리 | 1.1% |
| 변동금리 | 1.2% | 변동금리 | 1.0% |

-가계여신

| 부동산 담보 대출 | | 신용/기타 담보대출 | |
|-----------|-------------------------|------------|--|
| 고정금리 | 1.4%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0.7% | |
| 변동금리 | 1.2%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 | |

(예시) 고정금리로 취급한 3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1억원을 만기 1년 전에 상환할 경우,

1억원 × 1.4% × [365(윤년은 366) ÷ 1,095(윤년은 1,096)] =

466,666원(윤년은 467,518원)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설정금액의 10/1,000을 고객이 부담
- 등 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부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등은 은행이 반환합니다.

4. 실질유효금리

-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연율)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중도상환해약금, 기타 실비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금리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자 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매일의 잔액'의 의미 = 마감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합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 3%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기업여신은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적용되고, 1개월(기업여신은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기업여신) 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인 대출의 이자(5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31일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 연체기간 | 계산방법 | 연체이자 |
|-----------------|---------------------------------------|----------|
| 연체발생 ~14일분 | 지체된 약정이자(50만원) × 연8%(5%+3%)×14/365 | 1,534원 |
| 연체 15일 ~30일분 | 원금(1억2천만원) × 연8%(5%+3%)×16/365 | 420,822원 |
| 계 | | 422,356원 |

*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가계 주택 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가계여신) 원금 1억2천만원, 분할상환 원리금 매월 150만원,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인 대출의 분할상환 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 연체기간 | 계산방법 | 연체이자 |
|---------------|--|----------|
| 연체발생 ~1개월분 |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150만원) × 연8%(5%+3%)×1/12 | 10,000원 |
| 연체1 ~2개월분 | 원금(1억2천만원) × 연8%(5%+3%)×1/12 | 800,000원 |
| 계 | | 810,000원 |

* 분할상환 원리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원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기준이 다르게 적용(약정이자 상환기일 14일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됨에 따라 연체이자 계산방식 및 금액이 위 예시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기업여신은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거래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

변제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8. 유의사항

- **대출 계약시 신용점수**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일부 발췌)**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계약철회신청서 작성 및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은 일반금융소비자만 철회권 행사 가능)
 -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중도상환해약금 등을 부



담하여야 합니다.

■ '연체정보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 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증가, 연체정보 등록, 신용평점의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대되거나 기타 대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은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단,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다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시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계대출)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자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 (가계대출)체크카드 연계 계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약정 관련 안내사항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 시 결제계좌에서 이용금액이 바로 출금처리 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계좌를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금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대출사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 (가계대출)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변경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접수 및 신청 이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업대출)자금용도 외 유용시 주의사항

• 자금용도 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 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지연배상금 및 비용(약정이자,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본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향후 위법계약 등의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인 위 설명서의 주요 내용인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 설명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 상품설명서(권유용)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라 은행 이용자에게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출 권유 및 상담시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로 교부됩니다.

1.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예시

- CD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91일물)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금융채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증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 COFX연동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기 COFX 금리 또는 잔액기준 COF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매 6/12개월마다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 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에는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수수료 등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의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하여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기준 -기업여신

| 부동산/동산 담보 대출 | | 신용/기타 담보 대출 | |
|--------------|------|-------------|------|
| 고정금리 | 1.4% | 고정금리 | 1.1% |
| 변동금리 | 1.2% | 변동금리 | 1.0% |

-가계여신

| 부동산 담보 대출 | | 신용/기타 담보대출 |
|-----------|-------------------------|------------|
| 고정금리 | 1.4%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0.7% |
| 변동금리 | 1.2%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 |

(예시) 고정금리로 취급한 3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1억원을 만기 1년 전에 상환할 경우,

1억원 × 1.4% × [365(윤년은 366) ÷ 1,095(윤년은 1,096)] =

466,666원(윤년은 467,518원)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설정금액의 10/1,000을 고객이 부담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부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등은 은행이 반환합니다.

4. 실질유효금리

-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연율)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중도상환해약금, 기타 실비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금리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자 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매일의 잔액'의 의미 = 마감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 큰 금액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합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 3%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기업여신은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적용되고, 1개월(기업여신은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기업여신) 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인 대출의 이자(5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31일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 연체기간 | 계산방법 | 연체이자 |
|-----------------|---------------------------------------|----------|
| 연체발생 ~14일분 | 지체된 약정이자(50만원) × 연8%(5%+3%)×14/365 | 1,534원 |
| 연체 15일 ~30일분 | 원금(1억2천만원) × 연8%(5%+3%)×16/365 | 420,822원 |
| 계 | | 422,356원 |

*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조건,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가계 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가계여신) 원금 1억2천만원, 분할상환 원리금 매월 150만원,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인 대출의 분할상환 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 연체기간 | 계산방법 | 연체이자 |
|---------------|--|----------|
| 연체발생 ~1개월분 |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150만원) × 연8%(5%+3%)×1/12 | 10,000원 |
| 연체1 ~2개월분 | 원금(1억2천만원) × 연8%(5%+3%)×1/12 | 800,000원 |
| 계 | | 810,000원 |

* 분할상환 원리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원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기준이 다르게 적용(약정이자 상환기일 14일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됨에 따라 연체이자 계산방식 및 금액이 위 예시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기업여신은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거래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

변제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8. 유의사항

- **대출 계약시 신용점수**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일부 발췌)

-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계약철회신청서 작성 및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대출은 일반금융소비자만 철회권 행사 가능)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대출 등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중도상환해약금 등을 부



담하여야 합니다.

■ '연체정보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증가, 연체정보 등록, 신용평점의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대되거나 기타 대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은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단,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다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시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계대출)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자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 **(가계대출)체크카드 연계 계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약정 관련 안내사항**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 시 결제계좌에서 이용금액이 바로 출금처리 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계좌를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금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대출사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 **(가계대출)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변경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접수 및 신청 이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업대출)자금용도 외 유용시 주의사항**

• 자금용도 외 유용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 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지연배상금 및 비용(약정이자,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본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향후 위법계약 등의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인 위 설명서의 주요 내용인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 설명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